

한농연중양연합회 월례 세미나 보고서

2011-04 2011/07/08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목 차

- | |
|---|
| I. 주제발표문 1
(농림수산식품부 김기훈 농산경영과장) |
| II. 주제발표문 2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박상희 정책조정실장) |
| III. 주제발표문 3
(한국수산업경영인증양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
| IV. 토론회 발언 내용 녹취록 |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부설 농업정책연구소)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보도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그 밖의 문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070-7165-0017, kwak121@chol.com)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제발표문 1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및 정책방향

2011. 6.

1. 현 황

□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가세, 특소세 등)을 전액 면제 공급(농업용 '86.3월, 어업용 '72.1월부터 시행)

○ 대상기종 : 농용트랙터, 농업용난방기, 어선 등

○ '12.6.30까지는 유류세 전액 면제, '12.12.31까지는 75% 감면

* 면세유 종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 '10년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 302만kl ('11년 배정량 333, 10.3% 증)

- 농업용 : ('08) 198만kl → ('09) 190 → ('10) 192 → ('11.배정량) 210

- 어업용 : ('08) 99만kl → ('09) 115 → ('10) 110 → ('11.배정량) 123

○ '10년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 : 1조 8,169억원

- 농업용 : ('08) 11,535억원 → ('09) 11,208 → ('10) 11,353

- 어업용 : ('08) 6,021억원 → ('09) 7,522 → ('10) 6,816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 농식품부는 전년도 사용실적, 농기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신청

○ 기획재정부는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간공급한도량 배정

- 3/4분기까지 한도량을 4~6월중에 확정하고 사용추세를 감안하여 4/4분기 한도량을 12월 초순에 확정

○ 농·수협은 농·어가별 배정 후 필요시 추가배정 업무 수행

□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내용

-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전용카드 제도 도입('04 어업용, '08 농업용)
- 면세유 판매업소 지정제 운영(10,800개) 및 수협 직영주유소(14개) 확대
- 면세유류 부정유통 관련자 제재 강화('08)
 - 추징액 확대(감면세액의 10% → 40) 및 공급 중단기간 연장(1년 → 2)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한정('11)
 - 일시적 농업종사자를 제외하여 실질적인 농가에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나 미등록농가의 등록기간 확보와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행유예('11.6.30까지)

2. 공급효과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

- * 농가 인구 : ('95)4,851천명 → ('00)4,031 → ('08)3,187 → ('09)3,117 → ('10)3,068(△1.6%)
- * 어가 인구 : ('95)347천명 → ('00)251 → ('08)192 → ('09)184 → ('10)171(△7.1%)
- * 농업생산액 : ('95)26조3천억원 → ('00)32조 → ('08)38조5천 → ('09)41조4천억원(↑7.5%)
- * 어업생산액 : ('95)3조8천억원 → ('00)4조1천 → ('08)6조3천 → ('09)6조9천억원(↑9.5%)

□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농업을 촉진하여 신선채소와 과일류의 연중 공급 기반구축 및 수출농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

- * 채소수출실적 : ('05) 231백만\$ → ('08) 234 → ('09) 251 → ('10) 302
- * 화훼수출실적 : ('05) 52백만\$ → ('08) 76 → ('09) 77 → ('10) 103

□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 농가당 영농비 경감액 : ('95) 84천원 → ('08) 952 → ('10) 964
- * '10년 조세감면액 : 1조 1,353천억원, '10년 농가수 : 1,177천호

3. 필요성

-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동반 상승으로 농어가 유류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면세유 공급 중단 및 감면 축소는 농어가 경영에 악조건을 가중하는 결과 초래

<농가당 감면세액이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천원, %)

구 분	'06	'07	'08	'09	'10
농업경영비(A)	15,231	15,696	16,189	16,924	17,123
면세액(B)	1,054	1,152	952	937	964
비율(B/A)	6.9	7.3	5.9	5.5	5.6

- 어업의 경우 한 가구당 사용량은 농업에 비해 10배 규모

*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농가수/가구당 사용량('10년) : 192만kl/1,177천호/1.6kl

* 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어가수/가구당 사용량('10년) : 110만kl/66천호/16.7kl

- 면세유류 감면세액 축소 및 중단 시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로 농어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면세유 감면폭 조정시 농·어가 부담액 추정('10년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100% 감면	75% 감면	50% 감면	25% 감면	0%
면세액	18,169	13,627	9,084	4,542	-
농가부담액	-	2,838	5,677	8,515	11,353
어가부담액	-	1,704	3,408	5,112	6,816

○ 특히, 유류비의 의존도가 높은 시설원예·축산농가·어선어업의 경우 농·어업 경영비 상승은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상승과 국민가계 부담으로 작용

- 채소, 과일, 화훼류의 품질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약화

* 시설원예 가온면적(15천ha)중 91.3%(13.4천ha)가 유류 가온

- 어업인의 영어비용 증가로 출어포기 등 어가경제 파산 위기

* 어선어업의 경우 어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은 평균 20.3%

<어선어업의 어업비용(출어비, 감가상각비, 임금 및 관리비) 구성('09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어업비용 합계	출어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			감가 상각비
		소계	어구비	연료비	수리비	기타	소계	임금	일반 관리비	
금액	744,558	352,949	47,952	151,139	41,297	112,561	369,651	263,874	105,777	21,958
비중	100.0	47.4	6.44	20.3	5.5	15.1	49.6	35.4	14.2	2.9

□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기대치 충족 역할

○ 농·어업 경영비 경감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구조가 열악한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

<도시근로자 대비 농·어가 소득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	'90년	'95년	'00년	'05년	'10년
도시근로자소득(A)	11,343	22,771	28,659	39,025	48,092
농가소득(B)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비율(B/A)	97.2	95.7	80.5	78.2	66.8
어가소득(C)	10,023	18,780	18,875	28,028	35,696
비율(C/A)	88.4	82.5	65.9	71.8	74.2

4. 정책방향

□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가 실 사용량 전량 공급 추진

- 농·어가에서 필요한 실 사용량 전량을 공급, 부족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 공급 추진
 - 배정량 부족 농어가가 면세유 추가 신청시 실 사용량 확인 후 유보량을 활용하여 추가 배정
- 실 사용량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유류 사용이 많은 기종에 대해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확대
 - * (현재) 농업용난방기 등 4개 기종 → ('11.7.1 이후) 곡물건조기 등 3개 기종 추가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확대 추진(현 39개 기종)

-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 포함 추진
 - * '11년 조세감면 건의 : 농용굴삭기(자체중량 1톤미만), 사료배합기 등

□ 면세유 사용 농어가 등 사후관리 강화

- 품관원에 농가별 배정량 조정 권한 부여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농식품부(품관원), 시·도 및 농·수협 합동 교차점검 실시
- 선박 입출항 확인 등 조업사실 확인 강화

□ 에너지절약형 시설·장비의 개발·보급

- 지하공기열 이용 히트펌프, 에너지 효율 등급제 개발
- LED 집어등(集魚燈), 유류절감 장치 보급 등

□ 농·어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추진

- '11년 조세제도 개편방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 추진
 - 조세감면건의서 기재부 제출('11.5월), 기재부·국회 등 관계 기관 협의 추진(6~8월) 등

참고 1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농업기계(39개 기종)〉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로더(2톤미만)
44. 동력제초기

참고 2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실적

(단위 : 천kl, 억원)

유종	2008			2009			2010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농업용	1,975	18,337	11,535	1,898	14,110	11,208	1,923	16,410	11,353
휘발유	91	845	797	82	633	736	70	615	638
경유	1,566	14,426	10,194	1,524	11,276	9,989	1,562	13,310	10,205
등유	234	2,498	473	217	1,711	418	215	1,888	434
중유	79	459	60	74	453	61	73	551	71
윤활유	5	92	9	1	23	2	-	18	2
LPG	1	16	2	2	14	2	3	27	3
어업용	994	7,898	6,021	1,122	6,723	7,522	1,074	7,540	6,816
경유	793	6,327	4,853	908	5,350	6,309	895	6,204	5,824
중유	63	416	64	78	423	59	69	460	60
휘발유	131	1,030	1,092	129	798	1,139	103	720	914
기타	7	125	12	7	152	15	7	156	18

참고 3 제도개선에 따른 면세유 사용량 변화 추이

□ 농업용 면세유제도 주요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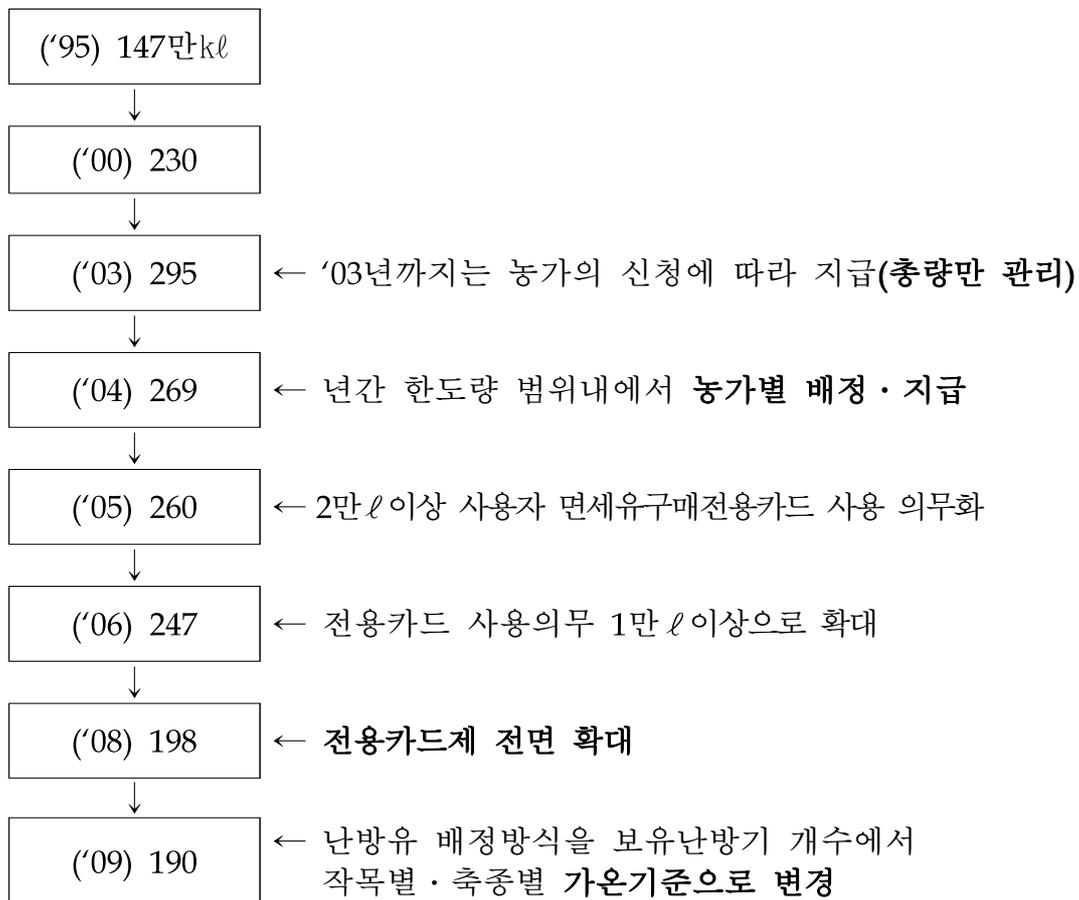
○ 면세유대상 농업기계 확대 · 정비(39종)

* ('08)버섯재배소독기, ('09) 무인헬리콥터, ('11) 농업용로더, 동력제초기

○ 면세유 전용카드제도 도입 등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

* ('04) 배정제도 도입, ('08)전용카드제도 전면도입, 판매업소 지정제 및 관할 시·군으로 구입지역 제한, 난방용 유류 가온기준 설정, ('10)신규 난방기 계측기 의무 부착 등

□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과 사용량 증감



참고 4 외국의 면세유 제도

【일 본】

- 면세유류 공급대상 : 경유, A 중유
 - 경 유 : 농업 또는 임업 경영자, 농지의 조성 또는 개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또는 소재 생산업 경영자
 - * 도로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농업용)으로만 국한하지 않음)
 - A 중유 : 시설원예, 축산농업, 양잠농업, 과수원예 등
- 면세대상기종 : 동력경운기 외 경운정지용 기계, 재배관리용 기계, 수확조정용 기계, 식물 및 섬유가공용 기계, 축산용 기계, 製材機, 集材機, 積載機, 可般植chip제조기
- 면세절차 : 면세유류 교부신청(사용자, 용도, 사용기계 등 기재)→교부→교부신청(수량, 판매업체 등 기재)
- 면세구입가격
 - (경유) 면세가격으로 구입, (A 중유) 과세가격으로 구입후 환급
- 부당사용 : 위조 또는 기타 부당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독 일】

- 농업용 기계·차량에 사용된 경유 관련 납부세액 환급

【호 주】

- 농업용 유류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대 만】

- 농기계 및 농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유류 면제

II. 주제발표문 2

농업용 면세유류 영구화 당위성 검토 및 관련 정책 건의

주제발표문의 주요 서술 내용 및 각종 수치가 농업 분야 중심으로 기술된 이유는 이번 주제발표 주체인 한농연이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산업 분야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 6. 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개요

가. 도입배경

- 농업기계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1986년 3월 1일부터 한시적 제도로 도입되어 현재 7회에 걸쳐 연장하여 운영되고 있음

나. 관련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0-108호(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 국세청 고시 제2009-46호(농·임·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 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 통계청 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

다. 면세내역

- 면세내역
 -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여 공급

(단위: 원)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개별소비세	-	-	90.00	17.00	20.00
교통세	529.00	375.00	-	-	-
교육세	79.35	56.25	13.50	2.55	-
주행세	137.54	97.50	-	-	-
합계	745.89	528.75	103.50	19.55	20.00
부가가치세	판매시 판매금액의 10% 별도 부과				

라. 공급대상

1) 공급대상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 재배 및 축산복합농업·농산물건조장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 재배업 중 콩나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1. 개인(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2) 공급대상 농업기계('11. 3.21 현재 39개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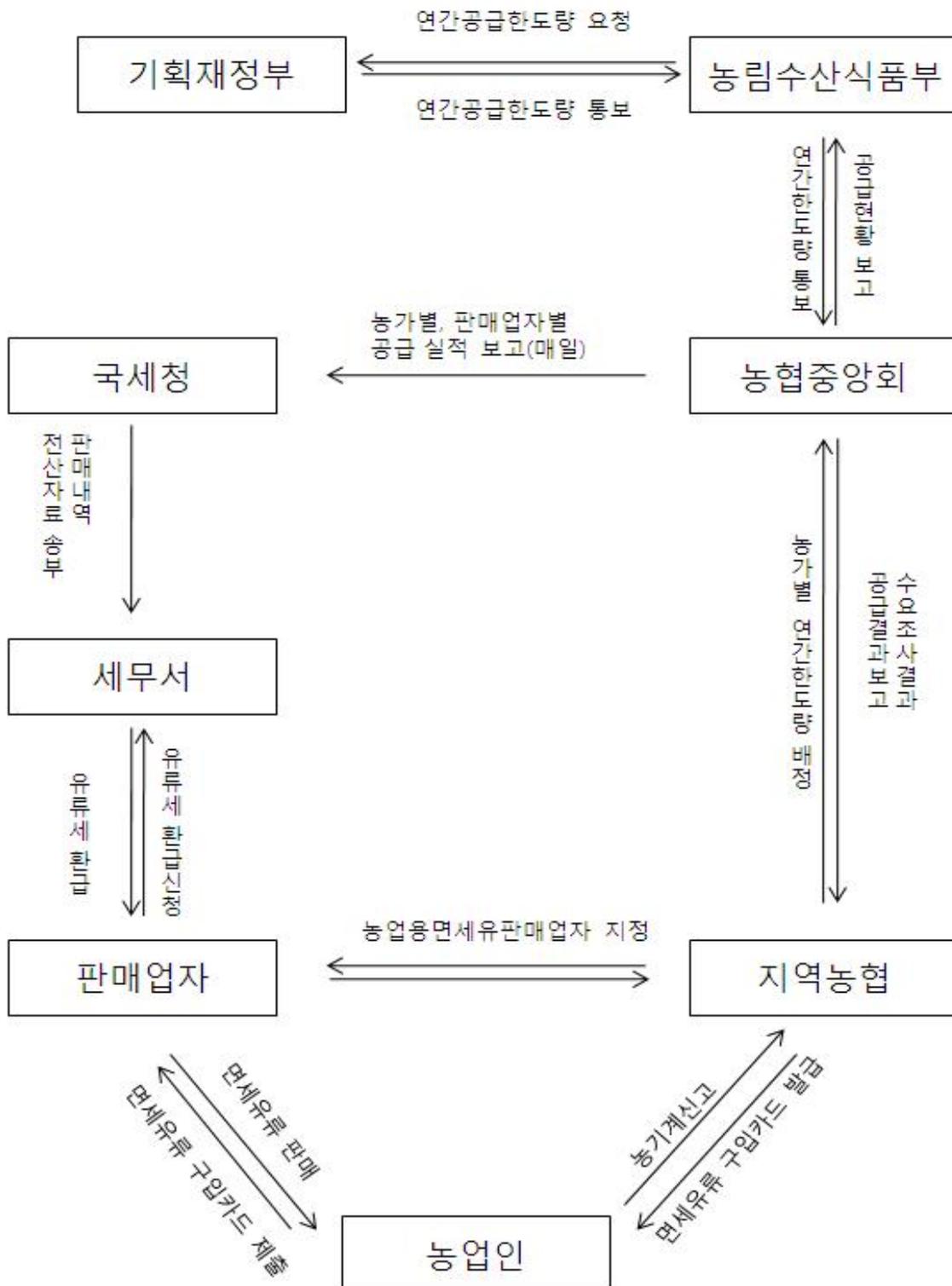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다음과 같다.

한농연 월례 세미나 보고서 (2011-04)

1. 동력경운기	20. 농업용 양수기
2. 농업용 트랙터	21. 동력예취기
3. 동력이앙기	22. 동력탈곡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23. <삭제>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24. 동력배토기
6. 바인더	25. 동력시비기
7. 콤팩인	26. <삭제>
8. 곡물건조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9. 주행형 탈곡기	28. 농산물결속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11. 동력중경제초기	30. 농산물세척기
12. 동력수확기	31. <삭제>
13. 농산물건조기	32. 동력혈굴기
14. 관리기	33. 동력구절기
15. <삭제>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16. 동력이식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17. 농업용 난방기	36. 동력파종기
* 육묘(배양·증식을 포함한다), 채소(새싹채소를 포함한다),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사육에 사용하는 난방기으로써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2010년 전에 신고한 난방기의 가동시간 계측기 부착은 별도로 정함.	37. <삭제>
18. 동력절단기	38. 농 선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39. 잔디깎는기계 * 25마력 이하의 농업용으로써 잔디재배농가에 한함.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 로더(2톤 미만)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마. 공급 및 관리체계

1) 공급체계도



2) 관련기관 및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국 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정 또는 개정 ○ 면세유류 제도의 존속 또는 폐지
기 획 재 정 부	○ 공급유종 및 연간한도량 결정 등 면세유류 기본정책 결정 ○ 면세유류 제도의 기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운용
국 세 청	○ 교통세 등 세액감면 등 조세업무 관장 및 법집행 ○ 면세유류 부정유통 직권조사 등
농 립 수 산 식 품 부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운영관련 각종 기준 제정 ○ 면세유류 공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농 협 중 앙 회	○ 농업용 면세유류 관련 집행업무 총괄

바. 제도개선 내역

1) 제도개선 연혁

년 도	내 용
1986.03.01	○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시작
1998.01.08	○ 가스 면세공급 개시(국세청고시 개정)
1999.08.09	○ 고추건조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온수보일러에 대한 면세유류공급
2000.12.29	○ 면세유류 공급시한 연장(당초 2000.12.31 →변경 2003.12.31) 일부과세결정(현행 100% 면세→75% 면세-시행일 2003.7.1)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법률 제6297호)
2002.07.01	○ 80,000ℓ 이상 사용농가에 대하여는 사용실적, 생산실적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 ○ 트랙터, 콤팩트, 선박, 농선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2002.12.11	○ 면세유류공급시한연장(2005.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4.01.05	○ 잔디깎는기계, 녹차채엽기에 대한 면세유류공급(재경부령 제344호)
2004.05.20	○ 면세유류 한도 배정- 대상자 : 직전년도 2만 리터 이상 사용자
2004.07.01	○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실시(직전년도 2만 리터 이상 사용자) ○ 면세유류취급수수료 징수(2%)

년 도	내 용
2004.12.31	○ 면세유류 공급시한 연장(2007. 6.30까지 연장, 2007. 7. 1~12. 31까지는 7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5.10.01	○ 면세구매전용카드제 확대(직전년도 1만 리터 이상 사용자) ○ 면세유류구입권 유효기간 2개월 → 1개월 단축
2006.12.30	○ 면세유류 불법유통 제재조항 강화 (고지일로부터 1년간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중지)
2007.06.01	○ 면세유류 공급시한 연장(2012. 6. 30까지 연장, 2012. 7. 1~12. 31까지는 7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8.02.28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제 도입, 부정사용 농가에 대한 농협의 고발조치 의무화, 농기계 변경 신고 의무화
2008.04.24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변경: 36개 기종 - 제외기종 : 동력상토제조기, 동력탈곡기, 동력탈각기, 동력심경기, 동력비닐피복기 - 추가기종 : 버섯재배소독기
2008.07.01	○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 전면확대(종전 2만리터 이상자→ 전농가 확대) ○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제도 시행
2009.03.30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변경: 37개 기종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보통형 콤파인, 교반식·연속식 곡물건조기 추가
2010.12.30	○ 공급대상자 변경: 개인→개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011.03.21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변경: 39개기종 - 추가기종: 농업용로더(2톤미만), 동력제초기

2) 그간의 제도개선 상황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의 합리적 조정

-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1. 3.21 현재 총 39개기종)
 - '11년 농업용 로더(자제중량 2톤미만), 동력제초기 추가(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
- 신규 난방기는 면세유류(경유)공급 제외(농림특례규정, '09.03.30개정)
 - 시중 경유가격 상승에 따른 부정유통 확대 방지를 위해 도입
- 임작업, 임대농기계의 경우에도 확인을 거쳐 실 사용량 공급('05년)

- 농가별 면세유류 공급기준의 합리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
 - (동력농기계) 영농규모, 재배면적 등 추가
 - ('08년 이전) 기종·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 연간 사용시간
 - * 규격에 따라 배정량이 달라 실제보다 큰 규격으로 등록하는 사례 발생
 - ('08년 이후) 08년 기준 + 영농규모·재배면적 감안
 - (난방) 재배면적 및 지역별·작물별 가온기준도 감안
 - ('09.10.1 이전) 난방기 보유대수
 - ('09.10.1 이후) 재배작목·재배면적, 사육두수도 감안
 - * 공급기준 변경으로 종계·산란계용 난방유 배정량 감소, 농민불만 가중

-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한 면세유류 관리제도 정비
 - '03년까지는 농업인에게 구입권을 발급하였으나, 과다 사용 및 부정사용이 빈발하여 농가별 배정방식으로 전환('04)
 - 면세유류구입카드 제도를 '05년부터 단계별로 도입('08년 전면도입)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정사용도 방지('05)
 - 농협중앙회 전산시스템에 농가별 배정량이 입력되어 있어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배정량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 * ('05) 2만ℓ 이상 사용농가 → ('06) 1만 → ('08. 7) 모든 농가
 - 농협에 등록된 농기계를 매 년마다 재신고 등 일제정비('07)
 - 사망·해외이주자 명단 등 면세유류 공급 중지대상자를 국세청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통보('07)
 - 면세유류 판매업소 지정제, 관할구역내에서만 구매 가능('08)
 - 신규난방기에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10)
 -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규정('10)

- 면세유류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농업인)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공급중단
 - (농 협) 감면세액의 20~40% 가산세 추징
 - (판매업자)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3년간 공급중단

◆ 제도개선 이후 면세유류 사용량 급감 : ('03)295만kl→(09)190만kl(△36%)

※ '08. 7. 1 이후 전용카드제 전면도입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 대폭 감소

2. 농업·농촌 경제 여건 추이(출처:KREI)

가. 농가교역조건 추이

- 농촌물가지수에 의한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2003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임. 이는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등의 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2010년에는 농가판매가격이 농가구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었지만 농가구입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8.3% 악화됨

나. 농업경영비 추이

- 2003년 이전에는 농업소득이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높아져 2009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6.4%로 하락함
 -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과 같은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비 상승과 고용 노임 증가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경영이 일반화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영비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비 상승률이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조수입은 3.6% 증가한 데 비해 경영비는 8.2% 상승하여(일본은 각각 2.8%, 3.9%) 우리나라 농가경제 수지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다. 도·농간 소득 격차

-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 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66.0%로 격차가 확대됨
-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5%(명목소득)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2%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됨
-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 대비 농가 1인당 소득은 더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88.6%에 머물게 됨

라. 농가구입가격 전망

- 2010년에는 환율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국제유가가 상승함. 그 결과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투입재 전체로는 전년대비 1.1% 상승함

표1.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2008	2009	2010	연평균 변화율	
				09/08	10/09
종자류	96.9	105.3	106.5	8.7	1.1
비료류	207.5	241.0	214.2	16.2	-11.1
농약류	104.2	120.8	124.8	16.0	3.3
사료류	155.5	179.5	166.2	15.4	-7.4
농기구	114.1	119.1	120.0	4.4	0.8
영농광열	148.7	110.7	120.7	-25.6	9.1
영농자재	123.3	117.6	123.9	-4.6	5.3
투입재 전체	145.6	150.8	152.5	3.4	1.1

마. 농가판매가격 전망

- 2011년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기상이변이 없을 경우 전년대비 3.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곡물은 0.3%, 채소는 9.1%, 과실은 2.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물은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2. 농가판매가격지수 전망(2005=100)

	2009	2010	2011	2016	2021	연평균 변화율		
						11/10	16/11	21/16
전체 농산물	101.0	108.1	104.7	101.1	100.9	-3.2	-0.7	-0.1
곡물류	100.0	98.5	98.2	88.0	79.9	-0.3	-2.2	-1.9
채소류	101.4	122.5	111.3	109.3	109.8	-9.1	-0.4	0.1
과실류	84.9	94.1	91.7	86.5	84.2	-2.6	-1.2	-0.5
축산물	103.3	107.5	108.5	104.4	109.2	0.9	-0.8	0.9

바.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 2011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약 8만 명(2.5%) 감소한 296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됨. 10년 후인 2021년에는 2011년 보다 약 71만 명 감소한 225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45.6% 수준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11년 6.0%에서 2016년 5.3%, 2021년 4.6% 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추세임

- 이에 반해 2011년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보다 약 5만 명(3.3%) 감소한 151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3. 면세유류가 농업계가 미치는 영향(효과)

가. 농축산물의 안정 생산 및 물가 안정에 기여

- 면세유류 제도는 유류소비가 많은 시설원예 및 축산(양계)농가에 면세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연중 신선채소, 과일, 계란 등의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연중 공급하여 국민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에 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은 농업인을 물론 국민들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 농가의 소득 보전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2010년 농업용 면세유류의 총 면세금액은 1조 1,352억 5,700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120만원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와 어떤 농업분야 정책보다도 농업소득 향상과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농어업소득은 최소 5.9%~최고 1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시설고추 등 시설재배 농가들은 면세유류가 중단될 경우 최소 30~40%의 소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효율화 및 농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은 산업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촌임의 급상승에 대응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농업노동력은 65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90년대 초반 20%에서 최근 48%로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농업기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 유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4. 면세유류 영구화 당위성 검토

가.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업계에 면세유류 영구 공급은 필수적인 요건임

- 현재 농업계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역, 쌀값 하락, 청년 인력 유입 부재 및 고령화 문제 등 내부적인 위협 요인들로 고통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세계 농업 초강대국인 한-EU FTA가 발효가 예정되어 있고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도 산·관·학 연구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상가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처럼, 농업이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유류의 장기적인 공급 체계를 갖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임

나. 사문화되어 있는 면세유류 일몰제

- 농림어업용 석유는 1998년부터 일정기간 각종 세금 등을 면제하여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는 일몰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그동안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면세 기간이 도래하는 일몰 직전에 매년 그 시기를 연장하여 약 14년 동안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6월에 다시 일몰기간이 도래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재연장을 추진하는 등 일몰규정 자체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 되고 있음
- 이번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통해 1~3년 면세유류 일몰 기간이 연장 될 가능성이 많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농업 경쟁력이 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1~3년 후에도 면세유류 일몰 기간 연장은 연장 할 수밖에 없음

다. 면세유류 일몰 연장을 위한 사회적비용 낭비

-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 해 사회적 갈등 비용이 GDP의 27%인 300조원에 달한다'(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이에 면세유류가 일몰이 도래 할 경우 일몰제도 연장을 위해 농업계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면세유류 일몰 연장은 추가 대책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데도 일각에서는 엄청난 지원이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지원되고 있다

고 호도되고 있어 면세유류 연장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마
음의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라. 과세유에 대한 세금 부과 항목과 농업용 시설 [농기계]의 사용 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 농업은 자연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
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과세는 적절치 아니함
 - 농업용 석유류를 사용하는 농기계 및 농업시설 등은 교통 혼
잡,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 유발요인이 거의 없는 자연 친화
적인 산업임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과세는 부적절함
- 경제학에서 외부경제 효과를 유발시키는 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을 장려해야 함
 - 반대로,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키는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를 부담시켜 공해유발 요인을 억제해야 함

마. 안정적인 영농 설계 및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함

- 면세유류는 시설하우스, 농기계 등 농업 장치산업에 사용되거나
일몰제로 시행되어 농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반 산업
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는 여러 가지 장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농업 부문의 투자에 해당되는 시설하우스 및 농기계에 대한 투

자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 일
몰제는 폐기되어야 타당함

- 그럼에도 면세유류 제도가 지금처럼 계속하여 일몰제도로 유지
된다면 농업인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음

5. 그밖의 면세유류 관련 대 정부 건의사항

가. 농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배정방식 개선

① 현 행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농협중앙회가 다음 연도의 석유제품별 소요량을 농식품부로 신청
 - 위 신청량과 전년도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가 당해 연도 면세유류 연초 배정량을 결정하여 농협에 배정 요청하며 이에 따라 농협이 연초 배정 실시
 - 농식품부 장관은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고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 한도량을 농식품부에게 통보하고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 통보
 - 만약,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 그 면세유류 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중앙회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징벌적 규정 존재

② 문제점

<공급기준량대비 연초 농업인 배정량 현황>

(단위: kl,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공급 기준량	연초 배정량	배정 비율	공급 기준량	연초 배정량	배정 비율	공급 기준량	연초 배정량	배정 비율
물량	3,877,413	1,976,000	50.9	4,384,411	2,100,000	47.9	3,607,908	2,100,000	58.2

- 농식품부가 공급기준량을 정했으나 정한 양만큼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공급기준량에 대한 불신 초래
 - 추가배정을 요청한 농가에만 추가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인간 불평등 발생 및 제도에 불만 초래
 - 농협은 한도량 초과에 대해 징벌적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추가배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③ 정책대안

- 공급기준량의 70%~80%(250만kl~280만kl) 등 농식품부가 정한 공급기준량을 농업인에게 최대한 직접 배정하여 공급기준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
 - 추가배정 요청 등 농업인의 행정업무 감소를 통해 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농협이 면세유류를 자기목적용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카드제 시행으로 농업인이 직접 카드 소지), 징벌적 규정 폐지로 농협이 적극적으로 추가배정 등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지원 유도

나. 농업용 면세유류 계측기 정부지원

① 현황

- 최근 정부는 면세유류를 대량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 버섯 재배소독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종에 대하여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방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농협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실제 사용량만큼 배정

② 문제점

- 하지만, 계측기 대당 가격이 약 40만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정부는 2011년 계측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8만리터 이상 사용농가라는 부농·대형농가에 한정되어 오히려 농업인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농가는 오히려 자비로 고가의 계측기를 구입해야하는 상황임

③ 정책대안

- 부정유통을 억제하고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정책에는 호응하되 농업인의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확대 추진

① 현황

-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업의 기계화와 농기계의 대형화·다양화·전문화 및 신규 개발로 인하여 면세유류 대상 기종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② 문제점

- 시설재배 농가 및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농기계 등록대수는 매년 10만대 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대형 농기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③ 정책대안

- 기타 농업인이 많이 사용 또는 신규 개발 보급된 농업기계를 지속 조사하여 공급대상 기종으로 포함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함
 - 농업용트럭, 4톤미만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사료배합기 등

라. 면세유류 취급수수료 정부지원을 통한 농업인 서비스 강화

① 현황

- 현재 농업용 면세유류는 비수익 정책 사업으로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면세유류 취급수수료 부담에 따른 지역 농협과 농업인들의 갈등이 초래하고 있음

② 문제점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취급수수료(공급가의 2%이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농촌 및 농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농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면세유류 관리업무 원가분석 외부용역 결과 2002년 기준 683억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농기계 증가율, 물가상승율 감안 현재 1,000억원대)

③ 정책대안

- 면세유류 취급수수료, 정부 위탁사업 관리비 측면에서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강구

마. 부정유통 점검 및 홍보 강화

① 현황

- 정부는 1회 적발될 경우 3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3년간 50% 감축하여 공급하고, 2회 적발되면 영구 중단을 추진중임

② 문제점

- 농업용 면세유류의 극히 일부의 부정사용으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고 있어 면세유류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정당하게 사용 중인 대다수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을 확대해야 함

③ 정책대안

- 농협담당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일선 농협에서 농업인에 대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농업인들이 면세유류 제도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 업무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농업인은 농관원의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불법 유통에 대한 농관원 조사를 강화해야 함

6. 면세유류 관련 외국 사례

국가명	주요 내용	비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운반, 농가 가정용 ○ 방법: 세액공제, 환급, 면세 ○ 내용: 연방과 일부 주에서 소비세 면세(휘발유 제외) ※ 유류세가 고속도로 건설기금으로 사용 	목적세 면세논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농업기계, 농업용시설 ○ 방법: 사후환급 ○ 내용: 농기계용 경유: 15엔/ℓ (경유인취세) 농업시설용 A중유: 2.04엔/ℓ (석유세) 	농림어업 경영안정화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농기계 및 농업용 차량 ○ 방법: 사후환급 ○ 내용: 유류가격의 5% 	안정적 식량확보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농기계 및 농업용시설, 특수자동차, 농산물 및 가축 운송용 트럭 ○ 방법: 사후환급 ○ 내용: 농업용디젤유는 일반과세의 46% 	목적세 면세논리

7. 토론회 이후 향후 대응활동 계획

- 면세유류 영구화 법안을 골자로 한 조세특별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5월 초)
 - 6.2 토론회 시작 이전에 김호연 국회의원 국회에 제출

- 면세유류 영구화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돌입(6월~8월)
 - 농수축산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 동참

- 면세유류 영구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 명부 국회 제출(9월)
 - 9월 정기국회에 서명 명부 제출

- 면세유류 영구화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대응활동 전개(상시)
 - 김호연 의원이 제출한 면세유류 영구화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당대표 면담 등 다양한 대응활동 전개

8. 참고자료(면세유류 공급 현황)

가. 농업기계별 공급 구성비(2010년)

농 기 계 명	배 정 량 (kl)	구 성 비 (%)
농 업 용 난 방 기	1,205,660	62.6
농 업 용 트 랙 터	328,625	17.1
동 력 경 운 기	90,945	4.7
농 산 물 건 조 기 (일 반)	106,568	5.5
곡 물 건 조 기 (순 환 식)	64,051	3.3
콤 바 인	28,503	1.5
관 리 기	23,174	1.2
동 력 이 양 기	9,100	0.5
고 속 분 무 기 (S S 기)	14,707	0.8
기 타	52,004	2.8
합 계	1,923,337	100

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현황

(단위: kl, 백만원)

구분	연도	휘발유	등 유	경 유	중 유	윤활유	LPG(톤)	계
공 급 량	01	148,172	443,918	1,732,079	106,586	6,930	2,282	2,439,967
	02	152,386	462,036	1,918,260	109,665	6,958	2,430	2,651,735
	03	163,875	488,746	2,188,686	99,187	6,997	2,800	2,950,291
	04	142,998	408,151	2,043,122	86,486	7,099	2,216	2,690,072
	05	135,628	402,406	1,963,405	86,500	6,547	1,606	2,596,092
	06	124,619	351,779	1,903,212	86,492	6,500	1,297	2,473,899
	07	124,562	334,494	1,933,271	78,679	6,070	1,036	2,478,112
	08	91,009	234,053	1,565,934	78,728	4,560	1,128	1,975,412
	09	81,944	216,676	1,523,595	73,611	658	1,658	1,898,142
	10	70,212	215,363	1,561,529	73,004	462	2,767	1,923,337
사 용 액	01	61,523	173,135	628,721	30,517	8,940	1,827	904,663
	02	65,114	183,874	708,180	33,149	9,674	1,780	1,001,771
	03	73,368	213,383	926,070	32,247	9,940	2,329	1,257,337
	04	72,980	222,633	979,376	29,076	10,873	2,013	1,316,951
	05	77,320	249,311	1,105,290	30,525	10,230	1,579	1,474,255
	06	77,376	235,298	1,203,091	37,360	10,636	1,381	1,565,141
	07	85,285	244,841	1,292,101	35,327	10,777	1,137	1,669,468
	08	84,450	249,839	1,442,626	45,940	9,189	1,624	1,833,668
	09	63,259	171,063	1,127,616	45,300	2,296	1,425	1,410,959
	10	61,544	188,803	1,331,027	55,107	1,837	2,715	1,641,033
면 세 액	01	127,208	71,358	462,475	3,197	894	259	665,391
	02	131,221	90,604	646,307	3,873	967	288	873,260
	03	141,351	111,	851,650	4,094	994	337	1,110,227
	04	124,275	109,206	906,268	3,919	1,087	299	1,145,054
	05	118,699	114,476	1,005,029	4,367	945	228	1,243,744
	06	109,716	92,064	1,103,438	5,375	1,064	196	1,311,853
	07	110,552	89,632	1,211,562	5,018	1,075	123	1,417,962
	08	79,654	47,311	1,019,418	6,048	918	181	1,153,530
	09	73,559	41,775	998,923	6,113	230	179	1,120,779
	10	63,761	43,400	1,020,500	7,080	184	332	1,135,257

다. 월별 공급현황

(단위: kℓ)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용량	%								
1월	259,266	10	261,372	11	229,698	12	219,371	12	192,715	10
2월	279,634	11	285,506	12	266,887	14	206,550	11	208,377	11
3월	290,341	12	292,116	12	250,365	13	191,451	10	203,370	11
4월	200,321	8	241,351	10	161,196	8	138,962	7	162,155	8
5월	153,015	6	152,731	6	141,011	7	106,421	6	113,530	6
6월	111,028	4	95,742	4	86,671	4	83,183	4	78,231	4
7월	89,821	4	87,660	4	40,234	2	55,647	3	56,611	3
8월	120,144	5	112,724	5	58,947	3	69,025	4	72,149	4
9월	149,221	6	118,951	5	82,686	4	89,591	5	88,490	5
10월	205,933	8	265,219	11	149,273	8	182,619	9	170,371	8
11월	260,625	11	250,926	10	184,203	9	204,868	11	230,645	12
12월	354,550	14	313,814	13	324,241	16	350,454	18	346,693	18
합계	2,473,899	100	2,478,112	100	1,975,412	100	1,898,142	100	1,923,337	100

라. 면세유류 가격동향

(단위: 원)

연도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중유		LPG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01년	1,276	417	573	420	566	414	643	377	316	286	891	777
02년	1,278	418	574	389	565	382	696	365	337	302	836	720
03년	1,319	455	671	449	663	443	811	420	357	316	952	826
04년	1,377	508	790	531	792	533	938	487	379	333	1,049	914
05년	1,440	565	885	604	889	607	1,097	576	434	380	1,132	989
06년	1,485	606	931	670	934	673	1,236	651	505	442	1,204	1,055
07년	1,559	672	948	684	947	687	1,287	660	526	461	1,259	1,119
08년	1,712	906	1,220	1,042	1,218	1,038	1,616	1,025	806	715	1,601	1,436
09년	1,543	710	904	750	898	729	1,353	755	719	633	939	835
10년 (면세/ 과세)	1,680	826	1,013	843	1,008	825	1,472	852	870	769	1,121	999
	49.1		83.2		81.8		57.8		88.3		89.1	

마. 농가사용규모별 공급량 구성비

사용량	농가수(호)		공급량(kl)	
		%		%
8만 l 이상	1,765	0.2	229,776	11.9
8만 l 미만~4만 l 이상	5,589	0.6	303,892	15.8
4만 l 미만~2만 l 이상	11,627	1.2	324,418	16.9
2만 l 미만~1만 l 이상	16,036	1.7	225,819	11.7
1만 l 미만~5천 l 이상	31,179	3.3	214,662	11.2
5천 l 미만~1천 l 이상	203,710	21.7	438,842	22.8
1천 l 미만~1백 l 이상	501,147	53.5	179,034	9.3
1백 미만	165,870	17.7	6,894	0.4
합계	936,923	100.0	1,923,337	100.0

III. 주제발표 3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 대책

2011. 06. 02.

임정수(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 대책

1. 면세유 공급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부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감면제도를 시행 중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면세유 제도에 대한 일몰규정을 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 일몰규정이란 규정해 놓은 기간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
- 이같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지난 '98년에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농어촌의 소득 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 직전인 '02년, '05년, '07년에 3번을 연장해 14년째 운영돼 오고 있음
- 따라서 일각에서는 면세유 제도의 일몰규정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계에서는 향후 한·EU FTA 등의 발효 이후 농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세유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특히 WTO/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감축 내지 철폐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보조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연료유의 투입 비중이 매우 높아 DDA 수산보조금 규제로 인해 공급 중단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168개 산업분야 중 어선어업은 5번째로 높은 연료비 비중을 차지

2. 어업용 면세유 운영 현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4종 세금 면세
-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은 국제 원유가와 환율, 경유제품 프리미엄(정제 마진)에 의해 결정되며, 어업용 면세유는 국내 정유사의 입찰에 의해 결정
 - * 면세유 공급가격=(두바이 원유가격+경유 정제마진)×환율+부대비용 및 수수료
- 어업용 면세유류는 시중가격에 비해 52~57% 저렴하게 공급
 - 특히, 휘발유는 시중가의 43% 수준에서 공급

【시중가격 대비 어업용 면세유 가격('10년 기준)】

(단위 : 원/ℓ)

유종	어업인공급가격(A)	시중가격(B)	차액(C=B-A)	할인율(C/B)
고유황경유	694.7	1,446.4	751.7	52%
저유황경유	729.6	1,462.3	732.7	50%
휘발유	711.3	1,641.3	930	57%

- '10년 기준 어업용 면세유는 1,098천kl를 공급, 약 7,010억원의 면세 혜택
 - 면세유 공급량 중 어선 및 건조장 등에 사용되는 경유 약 83%, 휘발유는 약 10% 공급

【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 공급 동향】

(단위 : 천kl, 억원)

유종	'08			'09			'10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합계	994	7,898	6,021	1,122	6,723	7,522	1,098	7,743	7,010
경유	793	6,327	4,853	908	5,350	6,309	903	6,265	5,877
중유	63	416	64	78	423	59	70	463	64
휘발유	131	1,030	1,092	129	798	1,139	118	850	1,054
기타	7	125	12	7	152	15	7	165	15

3. 어업용 면세유 제도개선의 필요성

1)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제 일몰시한 도래

- ☞ 연근해 어업용 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 '12.6.30까지는 유류세 전액 면제, '12.12.31까지는 75% 감면

2)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과잉어획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연료용 유류보조(면세유 포함)에 대한 금지 논의 진행

- ☞ 국내 수산업의 경우 어업용 면세유 의존도가 높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 시 산업기반 붕괴 우려
- * 어업용 면세유 관련 보조금은 '09년 기준 약 7,800억원 정도로 전체 수산보조금(약 1조 7천억원)의 45.8%를 차지

3)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동반 상승

- ☞ '11. 5월 현재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고유황경유 기준)은 드럼(200ℓ)당 200,370원으로 전년 평균(138,930원) 대비 44.2% 증가
- * '08. 8월 어업용 면세경유가격 최고치(231,110원) 대비 86.7% 수준

4) 어업은 유류(면세유)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급등에 취약

- ☞ 어업은 농업에 비해 가구당 10배, 최근 5년간 연평균 면세유 116만kl 사용
- * 농업용 면세유사용량/농가수/가구당 사용량('10년):192만kl/1,177천호/1.631kl
- * 어업용 면세유사용량/어가수/가구당 사용량('10년):110만kl/66천호/16.667kl
- ☞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 시, 어업경영의 채산성 악화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어업소득은 '09년(당시 국제유가 61.9달러) 대비 30.3% 감소 예상(어선사용어가, 20백만원→14백만원)

5) 국제협약에 따른 고유황 경유 사용 제한

- ☞ 해양환경관리법 의거하여 '12년 1월 1일부터 어업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비중(약 61.5%)을 차지하는 고유황 경유의 사용이 제한되어 유종 변경에 따른 어업인의 어업수익 감소와 더불어 연료비 보조가 금지될 경우 출어비 중 연료비 부분에서 2중고가 예상

4. 개선 방안

1) 어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지원방식 변경

- ☞ 조세제도 개편방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일몰제→영구면세 등 세제 개편)안에 반영
 - * 수산물 가격안정 : 국민 식생활 비중 및 물가 체감도가 높은 수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 헌법상 국가의무 이행 : 헌법상의 국가의 어민보호 의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계층인 어업인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수혜를 주고 있는 제도임
 - * 식량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 식량산업으로서 수산업 육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입억제와 수출촉진에 기여

2) WTO/DDA 수산보조금 금지 대비, 면세유 제도 개편방안 추진

- ☞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특정성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 * 미국 예) 도로 미사용 유류에 대해서는 연방 및 주정부 소비세 환급
 - * 국내 유류세 중 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도로 미사용(어선)유류에 대해 비과세(환급)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3) 유류 이용체계 개선

- ☞ DDA 협상으로 인하여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어선어업의 유류 이용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
 - * 유류절감 시스템 개발 투자 확대(어구, 어선, 어법 등)
 - * 경유에서 중유 사용으로 유도(중유관련 어선 부품 기술개발)

4) 유가 급등시 수산분야 맞춤형 지원방안 도입

- ☞ 수산업은 어업용 유류를 기반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FTA/DDA체결 및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외생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자조금 조성(어업용 유류 자조금 제도 도입)
- * 유류 가격완충자조금 : 어업인이 거출한 자조금과 이에 상응하는 정부보조금으로 유류 가격완충자조금을 조성, 급격한 유가 상승시 충격완화 지원금으로 활용

IV. 토론회 발언 내용 녹취록

- 일시 : 2011년 6월 2일(목)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김호연 국회의원실(충남 천안을)
- 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수축산연합회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 좌장 : 윤주이 대표이사 전무(한국농어민신문)

- 주제발표자 1 : 김기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
- 주제발표자 2 : 박상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주제발표자 3 : 임정수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지정토론자
 - 정태선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
 - 박진상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분사 분사장
 - 박종포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
 -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복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장

<주제발표 1 : 김기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

<주제발표 2 : 박상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주제발표 3 : 임정수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주제발표 내용은 위의 주제발표문을 참조

<지정토론>

정태선(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

저는 낙농농가 입장에서 면세유 영구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농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 한-EU, 한-미 FTA와 관련해서 보면 열악한 상황입니다. 조사료 기반 확충에 정부 정책이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친환경 축산, 방역 축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 3개가 한꺼번에 연결 고리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일례로 150두 키우는 농가가 조사료를 조달하기 위해 5만평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산 조사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쿼터제를 실시중입니다. 이 농가는 3대의 트랙터를 가지고 60일간 매일 8시간 농기계를 풀가동을 해야만 필요한 조사료(전체 사료 급여량 대비 17%)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6,600리터가 필요한데, 이 농가는 3,200리터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분 처리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도 면세유가 듭니다. 여기에 2,200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합 8,800리터가 필요한데 실제 3,200리터만 배정되는 것입니다. 이 농가가 만약 필요한 면세유를 다 공급받았다면 500~600만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면세유가 절박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지난 겨울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구제역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 생산량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면세유가 끊긴다면 낙농농가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적용 기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사례를 든 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트랙터뿐만 아니라 벧짚을 모아서 등글게 말아주는 롤베일러(결속기)가 필요합니다. 공급대상 기종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축산업 종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전업화로 인해 기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농기계 기종에 대해 면세유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박종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

여당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통과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발제 내용에 대해 저는 공감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간 제가 생각해 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토론회 전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면세유 부정 사용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수준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친구 한 사람이 버섯사 2동을 운영중인데 16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배정량은 10만리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자란 것은 더 싼 연료를 써야 하는 실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남은 경유는 난방에 쓸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쓰게 되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유 관련 벌칙은 투아웃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동생이 정읍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는데, 겨울에는 2~3년 전부터는 농사를 놀리고 있더라구요. 연료값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면세유인데도 불구하고 리터 당 1천원 이상이니 생산비와 인건비도 건질 수 없어서 “놀리는 게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면세유 영구화 문제는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러시아는 밀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자국 내 소비를 위한 물량마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산량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본적인 생산 인프라의 기본인 연료에 대해서 면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비싼 경유를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펠릿, 지열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서 농어민들이 보다 쉽게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우경(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산업에 있어 면세유는 복지 차원, 경영비 부담 경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이고, 산업 자체를 영위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근해 14개 허가어업의 당기순이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2007~09년 평균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고유황경유 기준 2008년 17만원, 2009년 12만원, 2010년 13만 8천원이다 보니까, 어업 경영수지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2011년에는 17만 8천원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6개 어업 부문이 적자입니다. 그나마 면세유가 나오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은 더욱 열악할 것입니다. 만약 면세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률은 전 어업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업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면세유가 지급되는데도 유가가 너무 높다 보니 어민들이 너무 힘들다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6월에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드럼당 당시 23만원을 넘었는데, 정부가 기준가격을 경유 리터당 1,8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가격이 넘어가면 절반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드럼당 19만 5천원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가격이 17만 8천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고유가극복 종합대책과 같은 특단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정부도 TF팀을 가동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수산보조금 금지에 대해 WTO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면세유 영구화 자체가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영구면세화된다 하더라도 WTO 수산보조금 협

상 의장 초안을 기준으로 보면 금지 보조금입니다. 지급하면 안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면세유에 대해서 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중이지만,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개별 세법으로 다뤄야 하고, 국내 유류세 중에서 도로 미사용 어선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법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상(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분사 분사장)

농협중앙회에서 면세유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국회의원 분들께 면세유 연장을 건의해 드렸지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면세유를 영구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급 기준량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너무 인색하게 주지 말고, 여유있게 주자는 건의도 드립니다. 정태선 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랙터 3대를 쓰는데 1대만 적용하는 것이죠. 추가로 면세유를 배정할 때는 양식을 간소화시켜서 농기계, 농작업 관련해서 추가 배정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작업 대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추가 배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추가 배정도 원활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와 같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정 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 이후 전용카드제가 도입된 이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자가 농업인, 판매자, 농협입니다. 면세유를 쓰는 입장에서,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는 수혜를 받는 제3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정복철(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장)

김우경 박사님 말씀 중에 와 닿는 게 어업의 생존 차원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업용은 1972년에 면세유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어선이 동력화돼서 기름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2008년에는 “기름 갖고 가서 오징어로 바꿔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110만 킬

로리터 6,800억원을 면세했습니다. 어업 생산액이 작년 7조 4천억원이었습니다. 어업 생산액 중 9~10%를 차지합니다. 농업용은 평균 1,6 킬로리터를 쓰는데, 어업은 16.6 킬로리터로 정확히 10배를 씁니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우리에게 위협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1순위를 가지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이 지속가능하게 가야 하니까 기름을 덜 쓰고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잡으려면 밤에 집어등을 켜야 하는데, 일반 전구로 쓸 때는 연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을 LED로 바꿨더니 1/3을 덜 씁니다. 불가피하게 기름을 써야 하는 양식어업에 있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비 비중 중 연료비는 20%라 하는데, 근해어선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면세유가 안된다고 하면 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면세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영구면세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중(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여당 및 야당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니 영구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한 사람도 안 와서 아쉽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전에도 이런 토론회를 했지만, 오늘은 면세유 일몰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부분이라 발전했다고 봅니다. 한농연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해 주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농기계를 사든, 시설을 하든, 어선을 하든 1년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를 전제하고 투자를 하는데, 2년 뒤에 “없어졌습니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영구화하자는 것은 농어업 경영 여건을 안정시키는 것이구요.

면세유가 먹거리,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품질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수출하고 좋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이 먹은 분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

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면세유 공급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한 대만 준다 하시는데, 저도 이것은 공감합니다. 최근 농작업 임대를 많이 하는데,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많이 해줘야 하는데 면세유 조금 가지고 해 줄수도 안할 수도 없잖습니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달더라도 쓸 양만큼 줘야 합니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기름을 적게 효율적으로 쓰고, 기름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세유 60%가 시설로 가는데, 보온커튼 등 많은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로 경유 보일러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정부가 지속적으로 80%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면세유 가격이 작년에는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유류가격 완충을 위한 자조금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면세유에 대해서 비축제도 도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격이 비쌀 때 싸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부도 선물거래를 활용해서 비축제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중토론>

이병한(경상북도 영덕군)

제가 듣다보니, 지원 총액이 농업이 1조 7천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정돼 있다 하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지원액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낮추고, 그리고 전기세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면세유에만 매여 있으니 생각의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류세를 낮춰야 하겠습니다.

박용관(충청남도 천안시)

토론회 자체가 저는 우습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이 유류세가 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생각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유류세 인하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충의(한국수산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

일손이 부족하여 바지락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기계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운기와 트랙터를 응용한 것인데, 경운기는 연간 180리터만 지원해서 턱없이 모자랍니다. 서해안 일원의 간석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면세유 활용이 필요합니다. 농협이 아닌 수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세유 배정량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저는 어선을 경영하는 선장입니다. 유류세 관련해서 생선을 생산하기 위해서 3일에 걸쳐서 전속력으로 어장에 가야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상에 앉아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계시는데, 면세유가 내려가지 않으면 저를 포함한 50명의 선원들이 출어를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회원

낙농육우협회 정태선 이사님 말씀처럼, 배에만 면세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물 작업을 할 때 크레인을 씁니다. 그런데 크레인에 면세유를 쓰면 위법이라 합니다. 승용차에 쓰는 게 아니라 작업용으로 쓴다는 건데, 유권해석을 해달라 하니 위법이라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